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4.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보조금 지급 주체의 확대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정지, 자료 제공 요청 등의 주체를 수정하고,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9호가목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안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제2호만 해당한다)·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를 “국토교통부장관(제2호만 해당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국토교통부장관(제43조제2항제2호의 보조금만 해당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한

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안 부칙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것을 말한다.		9. ----- ----- ----- ----- ----- -----.
가. <u>특별시장</u> ·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가. <u>특별시장</u> · <u>통합특별시장</u> --- ----- ----- -----
나. ~ 라. (생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10. ~ 13. (생략)		10. ~ 13. (현행과

② 특별시장·광역시·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

② 국토교통부장관(제2호만 해당한다)·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② (개정안과 같음)

수 있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1.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
- 가.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 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

- 1.·2. (개정안과 같음)

	<u>유대체연료 사</u> <u>업법」 제18조</u> <u>제2항 제1호에</u> <u>따라 석유가스</u> <u>중 부탄에 각</u> <u>각 부과되는</u> <u>개별소비세 ·</u> <u>교육세 · 부과</u> <u>금</u> 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 에 따른 자원안 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 송사업자등이 화 물자동차를 운행 하기 위하여 구 매하는 유류의 구매 비용 ③ (생략)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 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	③ (개정안과 같음)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현행과 같 음)
--	--	---

의 용도로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 특별시장 · 광역
시장 · 특별자치시
장 · 특별자치도지
사 · 시장 또는 군
수는 제43조제1항
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
게 사용하도록 지
도 · 감독하여야 한
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 특별시장 · 광역
시장 · 특별자치시
장 · 특별자치도지
사 · 시장 또는 군
수는 거짓이나 부
정한 방법으로 제4
3조제1항부터 제3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 ----- ----- ----- ----- -.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u>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u>국토교통부장관(제43조제2항제2호의 보조금만 해당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u>----- ----- ----- ----- ----- ----- ----- ----- ----- -----

1. ~ 6. (생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유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업자등이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

_____.

1. ~ 6.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의 거
래기능을 영구적으
로 정지하여야 한
다.

③ 특별시장·광역
시장·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 또는 군
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을 확인
하기 위하여 운송
사업자등으로 하여
금 소명서 또는 거
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이 운
송사업자등의 사업
장에 출입하여 장
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 2. (생략) ④ · ⑤ (생략)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u>시·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u>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u>시·도지사는</u>-----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	------------------------------------	---

② (생 략)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종사자자격에 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자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이론 및 실기 교육 참가자의 자격 확인과 제23조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나 정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u>국토교통부장관</u> <u>및 특별시장·광역</u> <u>시·장·특별자치시</u> <u>장·특별자치도지</u> <u>사·시장 또는 군</u> <u>수(광역시의 군수를</u>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u>국토교통부장관,</u> <u>시·도지사, 시장</u> <u>또는 군수</u>----- ----- ----- -----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86
----------	-------

발의연월일 : 2026. 3. 26.

발 의 자 : 복기왕 · 이종욱 · 박용갑
이연희 · 이진태 · 손명수
이재관 · 송기현 · 이상식
안태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화물운송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은 운송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임.

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가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급 한도에 도달하는 유가 이상으로 유가가 상승 시 실효성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음.

특히, 지입제로 영세·개인화되고, 유류비 상승 영향을 운송료에 적기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화물운송시장 구조 하에서 유류비 부담 증가는 화물차주의 순소득 감소로 직결되고, 고유가 상황 장기화 시 물류대란이 발생하거나 기업의 물류비 상승 영향이 소비자한테 전가

되는 등 부가적인 피해도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3조제2항).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보조금 지급 주체의 확대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정지, 자료 제공 요청 등의 주체를 수정하고,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가목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국토교통부장관(제2호만 해당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등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의 구매 비용

제44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국토교통부장관(제43조제2항제2호의 보조금만 해당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것을 말한다.	9. ----- ----- ----- -----.
가.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가. <u>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u> - ----- ----- -----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제43조(재정지원) ① (생 략)	제43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u> (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② <u>국토교통부장관(제2호만 해당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u> ----- ----- -----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1.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

2. 「<u>개별소비세법</u>」 제1조제2항제4호바목, 「<u>교육세법</u>」 제5조제1항, 「<u>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u>」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과금 ③ (생략)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생략) ② <u>국토교통부장관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u>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용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③ <u>국토교통부장관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u>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나 용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	<u>육세 · 부과금</u> 2. 「<u>국가자원안보 특별법</u>」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등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의 구매비용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u>----- ----- ----- ----- -----. ③ <u>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u>----- ----- ----- ----- -----
--	--

나 용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유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

-----.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3조제2항제2호의 보조금만 해당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1. ~ 6.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업자등이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또는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이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2. (생략)

④ · ⑤ (생략)

-----.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1.·2.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도지사는-----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혐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 ----- -----, ③ (현행과 같음)
--	---